

#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예산개요

#### 1. 세입예산

- 해당 사항 없음.

#### 2. 세출예산

-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5억 9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억 9천 6백만원\* 대비 2.5% 증액된 수준임.

\* 2022년도 당초·최종예산은 같음.

(단위 : 천원,%)

구 분	2022년도		2023년도	2022년 대비 증 감		증감률		
	당초	최종		당초	최종	당초	최종	
총 계	496,367	496,367	508,880	12,513	12,513	2.5	2.5	
행정관리	소 계	496,367	496,367	508,880	12,513	12,513	2.5	2.5
	행정운영경비	129,698	129,698	118,101	△ 11,597	△ 11,597	△ 8.9	△ 8.9
	재무활동	-	-	-	-	-	-	-
	사업비	366,669	366,669	390,779	24,110	24,110	6.6	6.6
교 부 금	-	-	-	-	-	-	-	

○ 2023년도 정책·단위·세부사업별 2022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

(단위 : 천원,%)

정책/단위/ 세부사업별	2022 예산		2023 예산	2022년 대비증감		증감률	
	당초	최종		당초	최종	당초	최종
합 계	496,367	496,367	508,880	12,513	12,513	2.5	2.5
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	366,669	366,669	390,779	24,110	24,110	6.6	6.6
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	21,260	21,260	67,360	46,100	46,100	216.8	216.8
고충민원 조사 처리	21,260	21,260	43,060	21,800	21,800	102.5	102.5
청원사항의 처리	-	-	24,300	24,300	24,300	100	100
시민참여 활성화	212,732	212,732	226,265	13,533	13,533	6.4	6.4
시민감사 및 주민감사	37,300	37,300	35,200	△2,100	△2,100	△5.6	△5.6
공공사업 감시평가	102,600	102,600	152,000	49,400	49,400	48.1	48.1
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	27,832	27,832	39,065	11,233	11,233	40.4	40.4
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	45,000	45,000	-	△45,000	△45,000	△100	△100
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	132,677	132,677	97,154	△35,523	△35,523	△26.8	△26.8
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	120,977	120,977	85,054	△35,923	△35,923	△29.7	△29.7
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	11,700	11,700	12,100	400	400	3.4	3.4
행정운영경비	129,698	129,698	118,101	△11,597	△11,597	△8.9	△8.9
기본경비	129,698	129,698	118,101	△11,597	△11,597	△8.9	△8.9
기본경비	129,698	129,698	118,101	△11,597	△11,597	△8.9	△8.9

## II. 검토의견

### 1. 세입예산 검토

- 해당 사항 없음.

### 2. 세출예산 검토

-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(이하 “옴부즈만위원회”)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(4억 9천 6백만원) 대비 2.5%(1천 3백만원) 증액된 5억 9백만원 수준임.

※ 전년도 당초·최종예산은 같음.

- 옴부즈만위원회 소관 7개 사업 중 전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“청원사항의 처리”(신규, 2천 4백만원), “고충민원 조사 처리”(102.5%, 2천 2만원), “공공사업 감시평가”(48.1%, 4천 9백만원), 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”(40.4%, 1천 1백만원) 등 5개 사업이며,

- 주요 감액 사업은 “위원회 직무량강화 및 홍보확대”(△29.7%, 3천 6백만원) 등 2개 사업임.

※ “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”(2022년 사업종료, 전년 4천 5백만원)

### 가. 청원사항의 처리

- 본 사업은 청원법(제8조)에 따른 ‘청원심의회’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, 2천 4백만원(순증)을 편성하고 있음.

□ “청원사항의 처리” 예산(안) : 사무관리비 24,300천원

과목구분	2023년 예산(안)	
사무관리비	○ 청원심의회 운영	= 19,200천원
	- 회의참석 수당 200,000원*4명*16회	= 12,800천원
	- 자료검토 수당 100,000원*4명*16회	= 6,400천원

과목구분	2023년 예산(안)	
	○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	= 3,000천원
	- 법률자문 수당 등 200,000원*3명*5회	= 3,000천원
	○ 청원심의회 위원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	= 2,100천원
	-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수당200,000원*4명*2회	= 1,600천원
	- 소모품 구입비 등 250,000원*2회	= 500천원
	증감사유	
	- 청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필요	

- 청원은 「헌법\*」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, 「청원법\*\*」에서는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

\* 「헌법」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

\*\* 「청원법」 (법률 제17701호, 2020. 12. 22., 전부개정, 2021. 12. 23. 시행) 제4조(청원기관)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(이하 “청원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과 그 소속 기관
2.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
3.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- 청원사항\*은 피해 구제, 공무원의 위법·부당 행위 시정·징계 요구, 법률·명령·조례·규칙 등 제·개정 또는 폐지,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,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

「청원법」 (법률 제17701호, 2020. 12. 22., 전부개정, 2021. 12. 23. 시행) 제5조(\*청원사항)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.

1. 피해의 구제
2. 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
3. 법률·명령·조례·규칙 등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4.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
5.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- 서울특별시장은 청원 제도의 총괄 및 청원심의회 구성·운영 사항을 ombudsman 위원회 사무로 분장\*(2022.7.22.)하고,

\*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 
(서울특별시규칙 제4490호, 2022.7.22., 일부개정, 시행)

제144조(시민감사ombudsman위원회)

- ① ~ ③ (생략)
- ④ 시민감사ombudsman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2.7.22>
  1. ~ 10. (생략)
  11. 청원 접수, 조사 등 청원 제도 총괄
  12. 청원심의회 구성·운영

[142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4조는 제146조로 이동 <2022.8.18.>]

- 「청원법」(제8조)에 근거하여 「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(2022.10.17.)\*\*하여 ombudsman위원회를 청원심의회 등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로 규정하였으며,

「청원법」(법률 제17701호, 2020. 12. 22., 전부개정, 2021. 12. 23. 시행)

제8조(청원심의회)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(이하 “청원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2.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
② 청원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\*\* 「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**

(서울특별시훈령 제1042호, 2022. 10. 17., 제정,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주관부서"란 「청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.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관부서가 된다.

- 지난 2022년 11월 10일 “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”를 구성(7명, 위원장 포함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3명, 외부 4명 위촉)한바 있음.

**□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**

(근거: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
○ 청원심의회 구성

- 위원장 :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(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)

- 위원 : 5 ~ 7명(외부위원 1 / 2 이상)

※ 외부위원 :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

※ 내부위원 :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

- 임기 : 2년(외부, 한 차례만 연임 가능)

○ 청원심의회 주요기능

-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,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,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

○ 따라서, 상위 법률에 근거한 청원심의회 구성 등을 위한 신규 예산의 편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,

-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(제7조제2항)에서는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,

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위원의 직무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1.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
2.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
3.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·중재
4.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
5.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
6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
7.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(이하 "감사위원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

- 본 예산안 심사 회기(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)에 청원 관련 사무를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함께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,
-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3명(위원장 포함)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확대한 것은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정행위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.

## 나. 고충민원 조사 처리

- 본 사업은 고충민원을 법률자문 또는 민원배심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, 전년 예산(2천 1백만원) 대비 102.5%(2천 2백만원) 증액된 4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.

※ 전년도 당초·최종예산은 같음.

※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2천 2백만원 편성(200,000원/명 × 3명 × 37회)

□ “고충민원 조사 처리”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2년		2023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계	(x-) 21,260	(x-) 21,260	(x-) 43,060	(x-) 21,800	(x-) 103
사무관리비	(x-) 7,860	(x-) 7,860	(x-) 29,660	(x-) 21,800	(x-) 277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13,400	(x-) 13,400	(x-) 13,400	(x-) 0	(x-) 0

〈세부 산출 기초〉

과목구분	2022년 본예산	2023년 예산(안)
사무관리비	○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= 960천원	○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= 960천원
	- 강사료 360,000원*1명*1회 = 360천원	- 강사료 360,000원*1명*1회 = 360천원
	- 교재비 6,000원*100부 = 600천원	- 교재비 6,000원*100부*1회 = 600천원
	○ 민원배심제 운영 = 6,900천원	○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지급 = 22,200천원
	- 배심원 등 회의참석 수당 200,000원*4명*4회 = 3,200천원	- 법률자문료 200,000원*3명*37회 = 22,200천원
	- 배심원 등 자료검토 수당 100,000원*4명*4회 = 1,600천원	○ 민원배심제 운영 = 6,500천원
	- 주배심 수당 100,000원*1명*4회 = 400천원	- 회의참석 수당 200,000원*4명*4회 = 3,200천원
	- 그림자 배심원 수당 200,000원*4명*2회 = 1,600천원	- 자료검토 수당 100,000원*4명*4회 = 1,600천원
	- 현수막 등 소모품 구입비 100,000원*1회 = 100천원	- 주배심 수당 100,000원*1명*4회 = 400천원
		- 법률자문 수당 200,000원*3명*2회 = 1,200천원
	- 소모품구입비 등 100,000원*1회 = 100천원	

과목구분	2022년 본예산	2023년 예산(안)
	증감사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요 고충민원의 법률자문 수당 확보(22,200천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22년 6월 말 기준 조사 137건에 대해 8건(약 5%)의 법률 자문이 실시된 바 있으므로, '23년도 고충민원 처리 목표량 740건의 5% 수준(37건)으로 반영</li> </ul> </li> <li>- 민원배심제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수당 확보(1,200천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년 평균 2회('20년 4회, '21년 1회, '22년 1회)</li> <li>· 자문수당: 200,000원/명 * 3명 * 2회</li> </ul> </li> <li>- 그림자 배심원 수당 삭제(△1,600천원)</li> </ul>	

○ 본 사업의 '사무관리비'는 고충민원 담당자 교육과 법률자문 수당 지급 및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, 예산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, 2023년 예산은 대폭 증가되었음.

※ 2019년 2천 3백만원 → 2020년 1천 3백만원(△42.9%) → 2021년 1천 5백만원(12.3%증) → 2022년 7백 9십만원(△47.0%) → 2023년 3천만원(277.3% 증)

- 이는 민원 및 감사청구 내용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, 감사청구 결과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의 구성·운영함에 따른 것임.

<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안>

**□ 구성 방안**

- 구 성 : 35명(비상근)    ※ 향후 50명 이내에서 추가 구성 가능
  -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,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
- 임 기 : 2년 (연임 가능)
- 기능 및 역할 : 감사·고충민원조사 관련 분야별 법률자문

**□ 운영 방안**

- 고충민원 및 감사 과정에서 자문위원별 분야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의뢰
  -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

○ **법률자문료 지급 기준**

- 1건당 200천원(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) 지급

※ 「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고문료 등),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 제27조(수당 등 지급)

○ **옴부즈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** 지난 7월 법률자문단 35명에 대한 위촉식을 마치고, 9월에 추가로 11명을 위촉하여 총 46명의 법률자문단을 위촉(뉴시스 2022.9.26.)한바 있음.

- 한편,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 실적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, 법률자문료(사무관리비)를 전년 대비 277.3%(3천만원)로 과다하게 증액 편성한 것은,

- 법률자문단 구성으로 자문 건수의 대폭 증가 예상에 따른 것이나, 법률자문단의 규모는 현 46명에 달하고 향후 확장할 계획에 있는바, 법률자문단의 운영이, 활동 실적 없이 명함 기재용 경력 만들기로, 악용하는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※ 본 사업 법률자문비(사무관리비) 전년 7백 9십만원 → 2023년(안) 3천만원(277.3% 증)

<최근 5년 간 고충처리 실적> (단위 : 건, '22.10.31.기준)

구분	조사처리			목표량
	계	직접조사	확인회신	
2022	292	68	224	430
2021	336	67	269	450
2020	265	50	215	450
2019	487	38	449	450
2018	629	28	601	721

□ **“고충민원 조사 처리” 예산(안)**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2년		'23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 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사무관리비	7,860	7,860	29,660	21,800	277.3

- 또한, 본 예산안과 함께 이미 구성을 마친 법률자문단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\*이 제출(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)되어 있는바, 자문단이 법정 위원회는 아니라고는 하나,
-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이상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 후에 예산(안)을 편성하는 절차 준수에 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**\*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의안번호 : 341
- 발 의 자 : 서울특별시장
- 발 의 일 : 2022.10.17.(회부: 202210.21.)

<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(발췌)>

현	행	개	정	안
제26조(시민의 감사 등 참여) 위원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.		제26조(시민의 감사 등 참여) 위원회는 -----		-----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-----.

**다. 공공사업 감시평가**

-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등\*이 수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를 통해 시정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, 전년(1억 3백만원) 대비 48.1%(4천 9백만원) 증액된 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.

\* 서울특별시 소관 본청, 소속기관 등\* 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,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 등

※ 전년도 당초·최종예산은 같음.

□“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”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2년		2023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계	(x-) 102,600	(x-) 102,600	(x-) 152,000	(x-) 49,400	(x-) 48
사무관리비	(x-) 90,600	(x-) 90,600	(x-) 140,000	(x-) 49,400	(x-) 55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12,000	(x-) 12,000	(x-) 12,000	(x-) 0	(x-) 0

- 주요 증액(4천 9백만원, 48.1% 증) 사유는 공공사업 감시활동(참관) 확대(당초 120개 사업 → 1,300개 사업)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 증액(3천 5백만원, 100% 증)과, 법률자문 수당의 신규 편성(1천 4백만원(순증))에 따른 것으로,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인력

-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
-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(위촉직) 및 법률자문단(위촉직) 등 외부 전문가
  - 전문분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·복지, 도시안전, 교육·문화, 산업경제(재활환경), 도시교통(도시계획), 일반행정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
  - 공공사업 감시·평가 시 제도개선 등 법률자문을 위한 자문단(35명)

○ 대상기관

- 시본청, 사업소, 투자출연기관,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), 사무위탁기관(위탁사무) 및 보조금 수령기관

○ 대상사업

-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
-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
- 그밖에 위탁사무,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·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

○ 활동내용

-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 활동 및 부조리 사항 발견 시 직권 감사 추진
- 시정참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, 정책제언 등 자문역할
- 시민감사·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간담회 추진(연4회)

- 본 사업과 관련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, 2022년 9월말 현재 '중점감시 활동'은 목표 121건에 실적은 61건(50.3%)에 불과하여, 매년 연말에 치우쳐 활동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,

〈중점감시 대상사업 계획목표 달성 비율〉 (단위: 사업 수)

년도	활동실적 및 달성비율				부진사유 및 대책
	전체 목표	설정목표	실적	달성비율	
2022년 9.30.기준	121	24 (상반기20%)	32	26.4%	상반기 감사음부즈만2명 결원으로 다소 부족하나 4/4분기 중 목표달성 예정
		48 (3분기40%)	29	23.9%	
		49 (4분기40%)			
2021년	122	24 (상반기20%)	17	13.9%	감시평가활동이 4분기에 집중되어 2020년부터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(상반기 20%, 3분기 40%, 4분기 40%)
		49 (3분기40%)	46	37.7%	
		49 (4분기40%)	59	48.4%	
2020년	121	24 (상반기20%)	17	14.0%	
		48 (3분기40%)	39	32.3%	
		49 (4분기40%)	65	53.7%	

※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쪽

- '참관활동' 실적은 2022년 9월말 현재 목표 290건에 실적은 166건 (57.2%)에 불과하며 전년에 이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, 목표 설정부터 효과 도출까지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〈최근 3년간 참관감시 활동 및 추진실적〉 (단위:참관회의 수)

연도	활동실적 및 달성비율			부진사유
	목표	실적	달성비율	
2022년 9.30.기준	290	166	57%	코로나19 확산으로인한 비대면회의 진행 등으로 인한 참관감시활동 요청 감소
2021년	310	261	84%	
2020년	280	305	109%	

※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쪽

- 그럼에도 공공사업 감시활동(참관)을 확대(당초 120개 사업 → 1,300개 사업)하고, 이에 따라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과 법률자문 수당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전년 대비 48.1%(4천 9백만원) 증액하려는 것이 사업실적과 모순되는 예산편성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〈예산 세부 산출기초〉

과목구분	2022년 본예산	2023년 예산(안)
사무관리비	○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200,000원*35명*10회 = 70,000천원	○ 공공사업 감시활동 수당 = 105,000천원  - 중점 및 일반감시 활동 200,000원*35명*7회 = 49,000천원  - 청렴계약 참관 200,000원*35명*8회 = 56,000천원
	○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= 20,600천원  -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수당 200,000원*35명*4회*70% = 19,600천원  - 현수막, 교재비 등 소모품 구입비 250,000원*4회 = 1,000천원	○ 시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= 20,600천원  -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수당 200,000원*35명*4회*70% = 19,600천원  - 현수막, 교재비 등 소모품 구입비 250,000원*4회 = 1,000천원
		○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200,000원*3명*24회 = 14,400천원
	증감사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사업 감시·평가 대상 확대 추진(당초 120개 사업 → 1,300개 사업)</li> <li>- 공공사업 감시·평가 시 제도개선 등 법률자문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참석수당 지급기준(기본료 15만원, 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) (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)</li> <li>※ 감시평가결과 조치요구 6년 평균: 100건 중 24% 법률자문 '16년 75건, '17년 109건, '18년 124건, '19년 123건, '20년 104건, '21년 140건</li> </ul> </li> </ul>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2,000,000원 = 12,000천원	○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2,000,000원 = 12,000천원

라.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 
(국외업무여비)

- 본 사업은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가입에 따른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세계 옴부즈만과의 교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, 전년(1천 2백만원) 대비 3.4%(40만원) 증액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.

세계옴부즈만협회 개요

- 설립시기 :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1978년 창설
- 설립목적 : 옴부즈만 개념의 확산 및 세계적 발전 도모 및 전 세계옴부즈만들간 정보·경험 교환
- 사무국 : 오스트리아 비엔나(Vienna) 소재
- 참여현황 : 전세계 118개국 215개 기관, 우리나라 5개 기관

※ 전년도 당초·최종예산은 같음.

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2년		2023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 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계	11,700	11,700	12,100	400	3
사무관리비	1,000	1,000	1,400	400	40
국외업무여비	10,000	10,000	10,000	0	0
국제부담금	700	700	700	0	0

〈세부 산출 기초〉

과목구분	2022년 본예산	2023년 예산(안)
사무관리비	○ IOI 연례보고서 및 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1,000,000원*1식 = 1,000천원	○ IOI 연례보고서 및 뉴스레터 게재 번역비 700,000원*2회 = 1,400천원
	증감사유	
	- 위원회 활동실적 번역내용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	
국외업무여비	○ 해외 옴부즈만(협회)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 5,000,000원*2명 = 10,000천원	○ 해외 옴부즈만(협회)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 5,000,000원*2명 = 10,000천원

과목구분	2022년 본예산	2023년 예산(안)
	증감사유	
	- '23년도 '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정회원'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교류견학 추진 - 국제 네트워크 조직인 IOI국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하고 세계 우수 옴부즈만과 교류 활동을 통해 시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편성	
국제부담금	○ IOI 연회비('21.7.1.~'22.6.30.) 700,000원*1회 = 700천원	○ IOI 연회비('22.7.1.~'23.6.30.) 700,000원*1회 = 700천원

○ 다만, 본 사업 중 '국외업무여비'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, 이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,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례적·반복적인 예산인 '국외업무여비'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※ 행정안전부 『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』에 따르면, 에너지·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되고, 우크라이나 사태, 공급망 차질,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되어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.

○ 한편,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'국외업무여비'를 편성하고, 2022년 '국외업무여비' 1천만원은 전액 불용이 예정되어 있는바, 이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·취소·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침\*에도,

\* 행정안전부 『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』

○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을 필요 사업에 적기 투자할 수 없게 하였는바,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1) 준수의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(건전재정의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## 마.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 확대

- 본 사업은 읍부즈만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의 역량 강화와 위원회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, 전년 대비 29.7%(1천 8백만원) 감액된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※ 2021년도 당초·최종예산은 같음.

### □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2년		2023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계	(x-) 120,977	(x-) 120,977	(x-) 85,054	(x-) △35,923	(x-) △30
기간제근로자등 보수	(x-) 7,417	(x-) 7,417	(x-) 7,694	(x-) 277	(x-) 4
사무관리비	(x-) 82,600	(x-) 82,600	(x-) 46,400	(x-) △36,200	(x-) △44
특정업무경비	(x-) 30,960	(x-) 30,960	(x-) 30,960	(x-) 0	(x-) 0

### 〈예산 세부 산출기초〉

과목구분	2022년 본예산	2023년 예산(안)
사무관리비	○ 고충민원 및 시민·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2,000,000원*1회 = 2,000천원	○ 고충민원 및 시민·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1,000,000원*2회 = 2,000천원
	○ 대시민 정보제공 = 80,600천원	○ 대시민 정보제공 = 44,400천원
	- 위원회 홍보 확대 대신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 = 50,000천원	- 위원회 홍보 확대 대신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 = 30,000천원
	- 홍보물 등 제작 1,800원*9,000매 = 16,200천원	- 연차보고서 제작 12,000원*1,200권 = 14,400천원
	- 연차보고서 제작 12,000원*1,200권 = 14,400천원	
	증감사유	
	- 위원회 홍보 확대 비용 조정(감액 반영) : 2022년 80,600천원 → 44,400천원 (36,200천원 감액)	

- 2020년 12월 실시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, 인지도는 86.3%, 업무 처리결과 만족도는 91.9%로 나타나 양호한 듯 보이나, 이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자체 패널(12,400명)을 대상으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,

〈 2020년 12월 위원회 인지도 등 조사결과 〉

기간	위원회 운영 인지도	위원회 이용 만족도	위원회 활동의 시민 권익보호 기여여부
2020.12.	86.3%	91.9% (업무 처리결과)	48.9%

※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0쪽.

-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조사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한바 있고,
- 이에 대해 위원회 활동실적 공유를 위한 누리집(홈페이지), 보도자료로 배포, 인터넷 언론사 웹배너 표출, 지하철 모서리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,

〈 연도별 위원회 홍보 실적 〉

(‘22.9월말 기준)

2022년	2021년	2020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언론매체 연계 홍보 실시 (보도자료 10건 배포)</li> <li>○ 홍보물·사례집 등 책자제작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홍보물(리플렛) 제작 및 배포</li> <li>- '21년 위원회 연차보고서</li> </ul> </li> <li>○ 위원회 홍보영상 전광판 표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보유 전광판 홍보 영상 표출</li> <li>- 세종문화회관 외벽 전광판</li> </ul> </li> <li>○ 지하철 매체 모서리 광고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대토론회 행사 개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주년 기념영상·기념품 제작</li> </ul> </li> <li>○ 언론매체 연계 홍보 실시 (보도자료 4건 배포)</li> <li>○ 홍보물·사례집 등 책자제작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홍보물(리플렛) 제작 및 배포</li> <li>- '20년 위원회 연차보고서</li> </ul> </li> <li>○ 시민권익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 사례 선정 및 사례 공유</li> <li>○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전자서명 활성화 추진 집중홍보 실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 보유 온라인, 오프라인 홍보 매체 활용</li> </ul> </li> <li>○ 위원회 홍보영상 전광판 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언론매체 연계 홍보 실시 (보도자료 11건 배포)</li> <li>○ 홍보물·사례집 등 책자제작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홍보물(안내책자·리플렛)</li> <li>- '19년 위원회 연차보고서</li> <li>- '16~'19년 감사사례집</li> </ul> </li> <li>○ 시민사회단체 순회방문(9곳)</li> <li>○ 뉴미디어 매체 활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블로그 운영, 홈페이지 제작</li> <li>- 카드뉴스 제작, 퀴즈이벤트 진행</li> </ul> </li> <li>○ 위원회 홍보영상 전광판 표출</li> <li>○ 지하철 매체 모서리 광고 추진</li> </ul>

※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0쪽.

- 2022년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엠보팅시스템을 통해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,
- 본 사업 사무관리비 산출기초 중 ‘대시민 정보제공’의 산출기초 홍보비를 44.9%(3천 6백만원) 감액하고 있는바, 본 예산안이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확대를 통한 수당의 대폭 인상된 사실에 비추어, 홍보 확대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 김정덕

입법조사관 최석훈